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1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1,131㎡, D 답 1,315㎡1)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원고가 종중의 시제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로서 그 소유명의만을 종손인 망 F의 부인 G으로 하여 두었는데, G이 이 사건 토지를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이 토지의 지목을 ‘전’이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표시한다.